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Ⅱ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택지개발지구 B-7BL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30층, 총 15개동, 총 1,304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올림픽등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공무원 또는 군인)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6조 참조)

※ 중소기업근로자, 군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① 청약예금 :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 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다만,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14호까지 및 제36조제1호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서 46조까지, 제48조 및 제 4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조에 따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 대상세대

(단 위: m²/ 세대)

구 분		79.8247	84.8937A	84.9527B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이주대책 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 철거민·군인·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9	60	60	129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

- 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미성년자인 세명이상의 자녀를 둔자로 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함[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배정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